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213
----------	-------

발의연월일 : 2019. 1. 17.

발의자 : 김수민 · 김관영 · 김종회
이동섭 · 윤영석 · 주승용
임재훈 · 김삼화 · 정병국
백승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생활체육시설, 생활체육대회 육성, 국제협력 등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내용이 포함됨.

그런데 실제로 생활체육을 실시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사의 경우 대부분이 1년 단위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이며, 근로 조건 및 복리·후생이 미비한 상황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근무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하여 생활체육 진흥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임.

이에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안정과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8호 신설).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안정 및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7. (생 략)</p> <p><u><신 설></u></p> <p><u>8. (생 략)</u></p> <p>③ · ④ (생 략)</p>	<p>제6조(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1. ~ 7. (현행과 같음)</p> <p><u>8.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안정 및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u></p> <p><u>9. (현행 제8호와 같음)</u></p> <p>③ · ④ (현행과 같음)</p>